

연구교수·연구원 임용 규정

제정 1998. 09. 03.

제10차 개정 2025. 8.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교수·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4)

제2조(정의) 본교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04.)

1. 연구교수

가. 정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학술재단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 (신설 2004. 9.21)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의 재정지원사업 또는 수탁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등”이라 한다)의 기획 및 계획 수립, 사업 운영(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을 전담하는 사람

2. 연구원 : 주로 연구 또는 학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사무를 전담하는 사람 (신설 2004.9.21.)

(조 변경 2003.5.23)

제3조(구분 및 임용자격) 연구교수·연구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연구교수: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신설 2003.5.23.) (개정 2006.12.4)

3. 전임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변경 2003.5.23.) (개정 2006.12.4)

4. 객원연구원 : 본교 이외의 타대학 교원, 관련기관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신설 2006.12.4)

(조 개정 2003.5.23)

제4조(신분) 제3조의 전임연구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교원과는 구분하나 교원에 준한 신분을 가진다.

제5조(임용절차 및 기간) ① 상임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소(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연구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12.4., 2007.11.8., 2019.06.25., 2022.04.20)

② 연구교수·전임연구원·객원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원)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해당 부서

장의 추천을 거쳐 교무연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5.23, 2006.12.4., 2007.11.8., 2019.06.25., 2022.04.20., 2024.11.04.)

③ 연구소(원)장 또는 부서장은 연구교수·전임연구원·객원연구원의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3, 2006.12.4., 2007.11.8., 2019.06.25., 2022.04.20., 2024.11.04.)

1. 이력서 1부.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연구소(원)장 또는 부서장 추천서 1부.
5. 연구참여 실적 및 수행계획서 각 1부. (신설 2003.5.23)

④ 연구교수·전임연구원·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재정지원사업등의 사업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3., 2006.12.4., 2024.11.04., 2025.8.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하는 경우 연구소(원)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서로 제3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참여 실적 또는 해당 재정지원사업등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23., 2006.12.4., 2024.11.04.)

제6조(처우) ① 연구교수·전임연구원·객원연구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비로 충당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의 보수**는 당해 재정지원사업등의 사업비로 충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4.11.04., 2025.8.29.)

② 연구교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조 변경 2003.5.23)

제7조(역할 및 활용) ① 연구교수는 연구 및 재정지원사업등을 전담하되, 본교 강의시 1강좌는 무보수 강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1강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래교수에 준하는 강의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2강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04.)

② 타교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연구 또는 당해 재정지원사업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강할 수 있으며, 강의는 1강좌로 제한한다. (개정 2006.12.4., 2019.06.25., 2022.04.20., 2024.11.04.)

(조 신설 2005.4.27)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개정 2005.4.27.)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부설연구소연구원임용규정에 의거 임용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453, 2005.4.27)

이 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0, 2006.1.4)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143, 2006.12.4)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과-1182, 2007.11.9)

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235, 2024.11.04.)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1887, 2025.08.29.)

이 규정은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